

-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·운영 -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의안 번호	638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9. 2.

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'22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「낙동강승전기념관」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함으로써, 지역 유일 호국·안보기념관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·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 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1조 ~ 제12조
(민간위탁의 기준 및 대상기관의 선정기준)
-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 ~ 제6조
(위탁사무 기준, 위탁사무 대상, 위탁사무 선정기준)
- 「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6조 (관리위탁)

○ 추진 필요성

- 민간의 전문성과 인적·물적 자원 및 정보제공, 축적된 사업 운영 경험 및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기념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
- 전후세대 올바른 국가관 정립, 평화통일 정신 계승·발전을 선도하고, 역사적 이해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성 확보

다. 위탁 범위 : 낙동강승전기념관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574-110(대명동)
- 개관일 : 1979. 6. 25.
- 규모 : 부지면적 10,532.5㎡, 건축연면적 1,829.59㎡, 지하1층~지상3층
- 주요시설 : 전시실(6.25관, 한국관), 강당(시청각실), 사무실 등
- 운영현황

연도	수탁기관	운영시간	교육프로그램 운영	예산지원(천원)
2021	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부	연중 무휴 (무료) 10:00~17:00	27개교/12,277명	381,046
2022			18개교/10,623명 (’22. 7월말 기준)	395,668
※ 수입 : 민간위탁금(시비), 시설 사용료·이용료 / 지출 : 인건비, 공공요금, 시설유지비 등				

○ 2022년 성과평가내역(평가기관 : (주)가치경영원)

- 종합평점 82.75점(나등급)

※ 등급부여기준

등급	가	나	다	라	마
평점	90점이상	89~80점	79~70점	69~60점	60점 미만

○ 위 치 도 :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574-110(대명동)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2023. 1. 1. ~ 2025. 12. 31.(3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396백만원 정도(전년예산 및 2023년 예산편성액 고려)

○ 인 건 비 : 300백만원

○ 공 공 요 금 : 38백만원

○ 시 설 유 지 비 : 38백만원

○ 사 업 비 : 20백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【 지방자치법 】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】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】

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(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)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(이하 “민간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처리기준의 불공정,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】

제4조(위탁사무의 기준)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1조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

제5조(위탁사무의 대상)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아동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2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3. 환경 기초시설 운영, 폐수·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
4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5. 체육·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6. 산업지원·직업훈련·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7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전에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나.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

○ 민간위탁추진계획

문서번호	자치행정과-516
등록일자	2022. 8. 5.
결재일자	2022. 8. 5.
공개구분	부분공개(5)

주무관	민간협력팀장	자치행정과장	행정국장	행정부시장
김혜인	김근수	이은아	연가	김종한
협조				

낙동강승전기념관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계획(안)

요 지

□ 추진근거

-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

□ 위탁개요

- (위탁대상)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·운영 전반
- (위탁기간) '23. 1. 1. ~ '25. 12. 31. / 3년간
- (지월예산) 396백만원 정도 * '22년도 지원기준으로 책정
- (위탁방법) 공모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→ 위수탁 협약 체결

□ 추진일정(안)

- 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동의 : '22. 9월
-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: '22. 10월
-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: '22. 11월
- 민간위탁 위·수탁 협약 체결 : '22. 12월
- 위·수탁 사무 개시 : '23. 1월



대구광역시
DAEGU METROPOLITAN CITY

【자치행정과】

낙동강승전기념관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계획(안)

- ✓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·운영위탁 기간만료*(22.12.31.)에 따라 재위탁(공모)을 추진하여 지역유일 호국·안보교육장의 위상을 강화하고 운영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
- * (위탁기간) 2018. 1. 1. ~ 2022. 12. 31. / (수탁기관)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부

1 추진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, 시행령 제19조
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~제12조
-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~제5조, 제10조
-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(관리 위탁)

제6조(관리위탁) 대구광역시장은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2 추진방향

-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건립('79. 6. 25.)하여, 대구시로 기부채납('89. 12. 29.)된 이후, 장기간 수의계약('90. 1월~, 총 8회 갱신)으로 운영*되었으나, 수탁기관 선정절차의 투명성·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으로 전환하여 재위탁 추진

*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(사용허가) 제2항(기부채납자에 대한 무상사용허가)

- 6·25전쟁 낙동강승전 기념 및 참전용사들의 얼을 기리는 기념관의 건립이념 계승 및 지역 대표 호국의 전당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최적의 수탁기관 선정**을 위한 「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」의 내실 있는 운영

** 기념관(시설)에 대한 효율적·안정적 관리·운영 능력(경험), 호국·안보 관련 기념 및 교육 사업추진 연관성(전문성), 수행기관의 책임성 및 공신력 등 종합적 검토

3 추진경과

○ '79. 6. 25. : 낙동강승전기념관 건립·개관(한국자유총연맹 주관)

✓ **건립목적**

- ▶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와 우월성 확보 및 확고한 국가관 정립
- ▶ 전후세대에 대한 올바른 대북관 제고 등 통일·안보교육장으로 활용

○ '89. 12. 29. : 대구광역시로 기부채납(한국자유총연맹 → 市)

○ '90. 1. 1.~ :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부 위탁·관리 운영

*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위탁 갱신(총 8회 연장)

○ '03. 2월 :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지정

○ '21. 7. 12. : 「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·운영 조례」 제정

4 추진계획(안)

□ 민간위탁 개요

○ (위탁대상)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·운영 전반

※ **시설현황**

위 치	시설규모		관리시설
	부 지	건 물	
남구 앞산순환로 574-110 (대명동)	10,532㎡ (3,192평)	1,829㎡(554평) / B1층 ~ 3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시실 강당, 사무실 옥탑 ▶ 주차장, 기계전기설비 등 시설물 전반 <p>* 3층 일부(VR관)는 남구청 운영</p>

○ (위탁기간) 2023. 1. 1. ~ 2025. 12. 31. / 3년간

○ (위탁방법) 공모를 통한 수탁기관(법인 또는 단체) 선정 → 위·수탁 협약체결

○ (지원예산) 396백만원(인건비, 공공요금, 시설유지비 등) * '22년도 예산 기준

※ 민간위탁금 보조를 원칙으로 하나, 초과부분은 수탁기관에서 자체부담

낙동강승전기념관 운영현황

- ▶ (수탁기관)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부(회장 : 정영만)
- ▶ (조직/인력) 2부(기획사업부, 경영관리부)-2팀(교육지원팀, 홍보미디어팀) / 6명
- ▶ (위탁예산) ('18) 367백만원, ('19) 366백만원, ('20) 381백만원, ('21) 381백만원

□ 민간위탁 내용 및 조건

위탁내용

- 낙동강승전기념관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
 - 기념관, 부대시설, 물품(장비) 등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
- 전후세대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
- 시민들의 효율적인 기념관 전시물 관람을 위한 지원 및 홍보
- 기존 시설 및 전시물의 관리·보존과 새로운 전시 대상물 발굴·전시
- 기타 기념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

위탁조건

-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
-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 및 조례 준수
-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·양도 및 재위탁 금지
 - 단, 위탁조건을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으나, 반드시 위탁기관의 사전승인 필요
- 기타 상세한 위탁조건은 위·수탁 협약으로 정함

□ 추진절차



5 향후일정

- 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동의* : '22. 9월

* <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> 제11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

- 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
-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: '22. 10월
 -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: '22. 11월
 - 민간위탁 위·수탁 협약서(안) 심사 : '22. 11월
 - * 감사위원회, 법무담당관실 의뢰
 - 민간위탁 위·수탁 협약 체결 : '22. 12월
 - * 수탁법인(단체) 변경시 시설물, 장비 등 인수인계
 - 위·수탁 사무 개시 : '23. 1월